

친애하는 뉴욕 주민 여러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집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세입자 괴롭힘은 위협부터 열 또는 온수와 같은 필수 서비스의 차단, 집 또는 아파트의 손상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세입자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 보복하거나 기타 이유로 괴롭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보호 수단이 있습니다.

이 간행물에는 집주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세입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는 물론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etitia James



뉴욕 법무장관
Letitia James

리소스

변호사를 찾는 데 도움

·귀하는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lawhelpny.org**.

· 무료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현지 변호사 협회를 통해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추천 페이지 **nysba.org/lawyerreferral/please** 나 카운티 변호사협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추가 리소스

· 집주인 문제 및 퇴거 지원과 관련된 추가 리소스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nyhousingsearch.gov/resources.html**.

세입자 괴롭힘

뉴욕주 세입자 보호



뉴욕주 법무장관실
Letitia James



뉴욕주에서 보복에 직면한 세입자 보호

뉴욕에서 집주인이나 정부 기관에 선의로 불만을 제기한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불만에는 보건 및 안전법 위반, 거주 편의성이나 미수리와 관련된 문제 또는 임대 계약에 따른 권리의 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입자*는 법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보복으로부터 보호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집주인이 보복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세입자가 선의로 불만을 제기한 후 1년 이내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퇴거 소송 제기. 세입자가 퇴거 소송 후 1년 이내에 그러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리면, 법률에 따라 집주인은 퇴거가 보복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퇴거가 보복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퇴거 소송이 종료됩니다.

- 세입자가 불만을 제기한 후 1년 이내에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대 계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함.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세입자에게 계속 임대하지 않음, 임대 만료 후 임대 갱신 거부, 불합리한 임대료 인상으로 새로운 임대 제안.

세입자에게 불법적으로 보복한 것으로 밝혀진 집주인에게는 벌금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소유주가 점유한 4개 미만의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세입자가 포함됩니다.

임대료 규제 및 임대료 통제 세입자 보호

집주인이 임대료 통제 또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뉴욕주의 임대료 규제법에 따르면, 괴롭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지에서의 사생활, 안락함, 즐거움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로 정의됩니다.

-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통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866) ASK-DHCR ((866) 275-3427) 로 전화하거나 **nysdcr.org** 여 New York State Homes and Community Renewal (HCR)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47년 2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지어지고 1971년 7월 1일 이후 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점유한 아파트는 임대료 통제 대상입니다.

-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가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있고 건물에 6개 이상의 아파트가 있는 경우 임대료 규제 대상입니다.